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천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6. 1. 6. 강원도 ○○시 ○○길0에 있는 ○○○○○○(주) (대표이사 ○○○)와 ‘0000○○○○○경기장주변 ○○○ 하천정비사업’을 총 공사부기금액 5,199,699,30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2016. 1. 13. 착공하여 2018. 1. 11.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다.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5. 12. 16. ○○○도 ○○시 ○○구 ○○로 00, ○○○○○○○○ 0000호(○○동)에 있는 (주)○○○○○○○○(대표자 ○○○)외 2개사¹³⁷⁾와 총 953,579,0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21. 착수하여 2017. 12. 20.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137) 강원도 ○○시 ○○로000, 0층 000호(○○동, ○○○빌딩)에 있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강원도 ○○군 ○○읍 ○○○길 000-5에 있는 (주)○○ 대표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평창군(○○○○과)에서는 위 ‘0000○○○○○○경기장주변 ○○○ 하천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 합류부 부근 250m의 하천정비를 2016. 6. 30. 준공된 ‘○○○ ○○○ 생태하천복원사업 4차¹³⁸⁾’에 포함하여 시공을 완료¹³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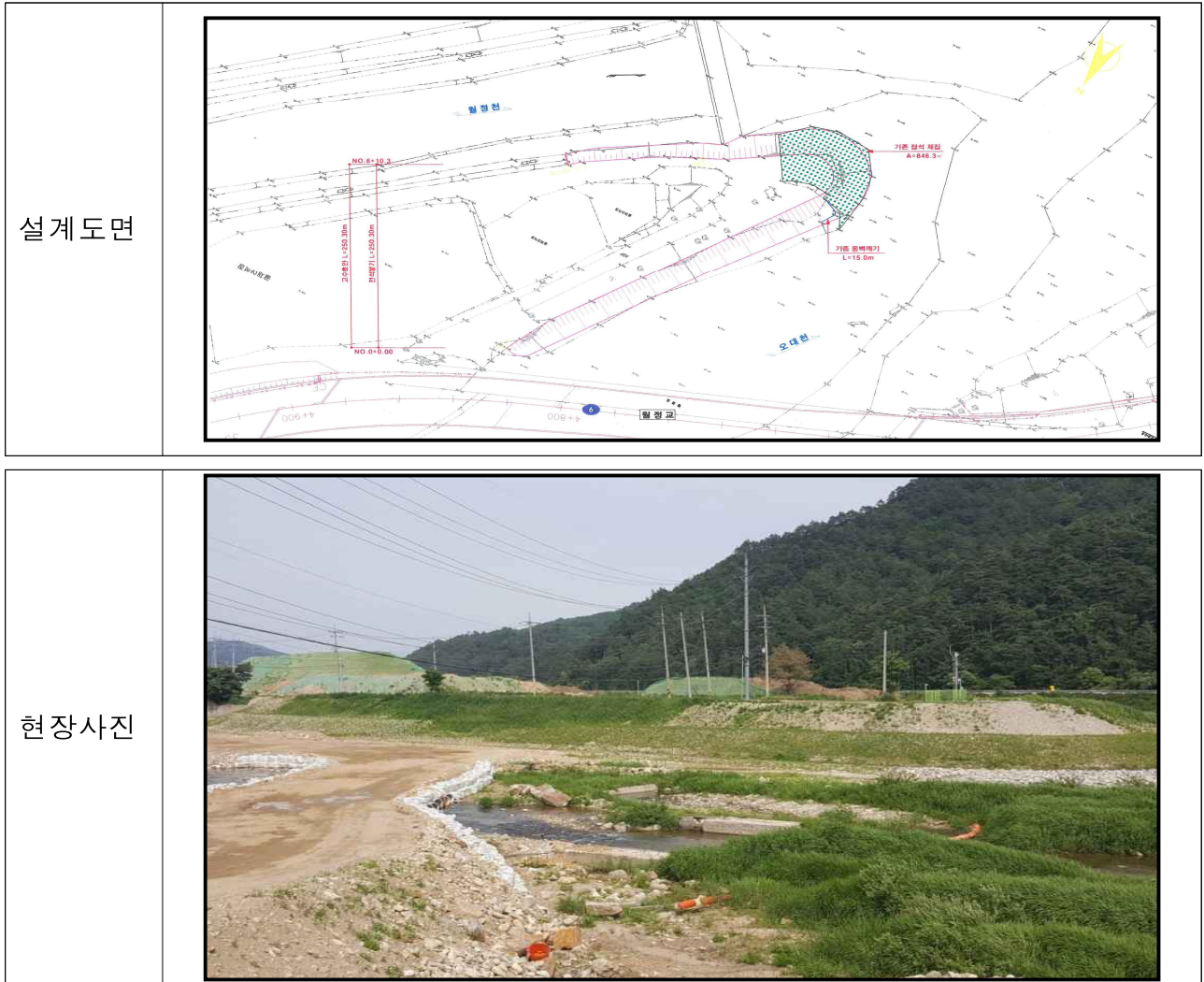
그런데, 강원도(○○과)에서는 ○○○~○○○ 합류부 부근 250m구간(1-1구간)이 2016. 6. 30. 준공된 ‘○○○ ○○○ 생태하천복원사업 4차’에서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있어 2016. 3. 8. ‘0000○○○○○○경기장주변 ○○○ 하천정비사업’의 설계 변경 시 사업구간에서 제외¹⁴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 354,100,000원 상당을 감액했어야 하는데도, 장래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이 향후 추가구간을 조사 후 반영한다는 사유로 ‘추가조사예정구역’이라는 항목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공사비 354,100,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138) 평창군(○○○○과)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2014. 12. 환경부)」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2014. 1. 21. ‘평창군 ○○○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사업’를 한국○○○○과 위·수탁협약을 맺었고, 한국○○○○은 2014. 3. 13. 강원도 ○○시 ○○로 000에 있는 (주)○○(대표이사 ○○○)와 ‘○○○ ○○○ 생태하천복원사업 4차’를 총 공사부기금액 8,633,420,000원에 도급계약하여 시행

139) ○○○○공단에서는 수충부 사면 유실방지를 위해 2015. 6. 17. ○○○~○○○ 합류부 부근 250m 구간의 하천정비를 추가로 포함하였음

140) 2016. 2. 2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 합류부 부근 250m 구간(1-1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강원도청에 실정보고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2016. 3. 2. 실정보고 승인하였음

[그림] “○○○~○○○ 합류부 부근 250m 구간(1-1구간) 설계도면”



[표] “○○○~○○○ 합류부 부근 250m 구간(1-1구간)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원)

당초 설계			변경 설계		
명 칭	수량(m)	금액(천원)	명 칭	수량(m)	금액(천원)
계		354,100,000	계		354,100,000
○ 1-1구간	250m	354,100,000	○ 1-1구간	250m	-
- 공사비		231,000,000	- 공사비		-
- 관급자재비		123,100,000	- 관급자재비		-
			○ 2-2구간		354,100,000
			- 추가조사예정구역		231,000,000
			- 관급자재비		123,100,000

* 강원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0000○○○○○경기장주변 ○○○ 하천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추가조사
예정구역’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54,10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